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121

제출년월일 : 2015. 9. 30.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1. 개정이유

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 (안 제10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3) 입법예고(2015. 9. 2. ~ 2015.9.22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4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없음

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** 제목 중 “지정”을 “지정 등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, “변경”을 “변경 또는 지정 취소”로 하여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, “변경”을 “변경 또는 지정 취소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정·변경”을 “지정, 변경 또는 지정 취소”로 제3호 중 “지정·변경과”를 “지정, 변경 또는 지정 취소와”로 하여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된 경우
2. 그 밖에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등

제11조의 제목 중 “지정·변경 시”를 “지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제1호 중 “지정·변경”을 “지정, 변경 또는 지정 취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사항은 없음

4. 작성자

- 일자리경제과 행정7급 양경완(330-1914)

□ 유통산업발전법 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13조의3(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등”이라 한다)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